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김대검 소유물건(2024타경22278)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법보좌관  
마정재

감정평가서번호: 9-240312-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경남지사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장형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경남지사 지사장 장형성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팔천육백팔십구만팔천원정(₩186,898,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법보좌관 마정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대경 (2024타경2227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3.21	2024.03.20 ~ 2024.03.21	2024.03.21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6,052	토지	6,052	-	186,898,000
		이	하	여	백	
	합계					₩186,898,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I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소재 '충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근거 및 기준가치

#### 가. 감정평가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였음.

#### 나.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3.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4년 03월 21일임.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2024년 03월 20일 및 2024년 03월 21일, 2일간 귀 제시목록과 공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을 실지조사 하였음.

## 5. 대상물건의 현황

【출처 : 귀 제시목록, KAPA HUB PLUS 등】

일련 번호	소재지 (통영시)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도로 교통	2023년 공시지가 (원/㎡)
1	명정동 153	1,474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4,860
2	명정동 154	30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급경사	맹지	2,680
3	명정동 155	274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3,400
4	명정동 159	1,478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3,400
5	명정동 160	2,588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3,400
6	명정동 163	112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3,400
7	명정동 169	96	전	목전	보전녹지	부정형 완경사	맹지	3,400

##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위성사진 등에 의거하였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지적 경계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매 진행 및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II 감정평가 방법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

-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토지는 토지평가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I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 가.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공법상제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표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출처 : KAPA HUB PLUS】

기호	소재지 (통영시)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공시지가 (원/㎡)
A	명정동 153	1,474	전	보전녹지	전	맹지	부정형 완경사	4,870

## 다. 시점수정

구 분	지 역 (기 간)	계 산 식
표준지 A	경상남도 통영시 (24.01.01~24.03.21) (녹지)	2024.01.01 ~ 2024.01.31 : 0.071 $( 1 + 0.00071 ) * ( 1 + 0.00071 * 50/31 )$ ≒ 1.00186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어떤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수준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본건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비교치	1.000
---------	-------

## 마.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이란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대상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개별요인을 조건별 평점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격차율을 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1 / 표준지 A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동일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동일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동일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동일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동일함.
		기타		
격차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2 / 표준지 A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0	표준지 대비 면적 등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9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3,4,5 / 표준지 A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대등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6,7 / 표준지 A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0	표준지 대비 면적 등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900	

## 바. 그 밖의 요인의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98두6067(1998. 7. 10.), 92누 16300(1993. 9. 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2) 격차율 산정식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에서의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평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에 따른 산출액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참작함.

$$\begin{aligned} \text{격차율} &=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평가}}{\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3) 인근 사례 및 사례 선정기준

평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실제 이용 상황 등 및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성의 요건을 갖춘 평가 선례 등이 있을 때는 평가 선례 등의 가격을 참작할 수 있음.

【출처 : KAPA HUB PLUS】

기호	소재지 (통영시)	지목	기준시점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비고	적용 표준지
1	명정동 ***~*	답	2022-09-27	보전녹지 (전)	31,000	법원경매	A
2	명정동 ***	전	2020-08-13	보전녹지 (전)	27,000	법원경매	
3	명정동 ***	답	2022-09-27	보전녹지 (전)	36,000	법원경매	
4	명정동 ***	전	2021-07-12	보전녹지 (전)	45,000	법원경매	
5	명정동 ***	전	2021-02-22	보전녹지 (전)	18,000	담보	

### (4) 사례의 선정

상기 사례자료 중 대상 및 표준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높으며,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 기호 “1” 를 선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5) 격차율 산정

- 표준지(A) / 사례 1 -

소재지	기호	기준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산가액 (원/㎡)	격차율
명정동 ***-*	1	31,000	1.01061	1.000	1.000	31,329	6.421
명정동 153	A	4,870	1.00186	—	—	4,879	
시점수정	경상남도 통영시 (22.09.27~24.03.21) (녹지) $(1 + 0.00194 * 4/30) * (1 + 0.00170) * (1 + 0.00142) * (1 + 0.00084) * (1 + 0.00449) * (1 + 0.00071) * (1 + 0.00071 * 50/31)$ $\approx 1.01061$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개별 요인	구 분	평점		비 고			
		표준지	사 례				
	접근조건	1.00	1.00	대등함.			
	자연조건	1.00	1.00	대등함.			
	획지조건	1.00	1.00	대등함.			
	행정적조건	1.00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1.00	대등함.			
누 계	1.000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과정을 거쳐 본건 평가에 적용할 그 밖의 요인 격차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 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구 분	격차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표준지 A	6.421	6.42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 식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 토지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870	1.00186	1.00	1.000	6.42	31,324	31,000
2	4,870	1.00186	1.00	0.900	6.42	28,191	28,000
3	4,870	1.00186	1.00	1.000	6.42	31,324	31,000
4	4,870	1.00186	1.00	1.000	6.42	31,324	31,000
5	4,870	1.00186	1.00	1.000	6.42	31,324	31,000
6	4,870	1.00186	1.00	0.900	6.42	28,191	28,000
7	4,870	1.00186	1.00	0.900	6.42	28,191	28,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 가.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및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 나. 거래사례의 선정

아래의 거래사례 중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 기호 “7” 을 선정하였음.

【출처 :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통영시)	지목	거래 시점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적용 사례
6	명정동 ***	전	2023-06-29	보전녹지 (전)	31,885	
7	명정동 ***	전	2023-10-23	보전녹지 (전)	76,035	일련번호 1~7
8	명정동 ***	전	2019-02-25	보전녹지 (전)	37,724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바,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	-------

## 라. 시점수정

거래사례	지역 (기간)	지가변동률
기호 7	경상남도 통영시 (23.10.23~24.03.21) (녹지)	$(1 + 0.00002 * 9/31) * (1 + 0.00033) * (1 + 0.00030) * (1 + 0.00071) * (1 + 0.00071 * 50/31)$ $\approx 1.00249$

## 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어떤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수준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본건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비교치	1.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바.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3,4,5 / 사례 7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70	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75	사례 대비 토양, 토질 등에서 열세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80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42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2 / 사례 7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70	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75	사례 대비 토양, 토질 등에서 열세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75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 면적 등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39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일련번호 6,7 / 사례 7 -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항목	비교치	비교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70	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75	사례 대비 토양, 토질 등에서 열세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75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 면적 등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394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 식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토지단가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76,035	1.000	1.00249	1.000	0.420	32,014	32,000
2	76,035	1.000	1.00249	1.000	0.394	30,032	30,000
3	76,035	1.000	1.00249	1.000	0.420	32,014	32,000
4	76,035	1.000	1.00249	1.000	0.420	32,014	32,000
5	76,035	1.000	1.00249	1.000	0.420	32,014	32,000
6	76,035	1.000	1.00249	1.000	0.394	30,032	30,000
7	76,035	1.000	1.00249	1.000	0.394	30,032	30,000

### 3. 토지가액 결정

#### 가. 시산가액의 검토 및 토지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단가)의 검토 결과,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단가)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토지평가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을 기준으로, 토지가액(단가)을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 정	비 고
1	31,000	32,000	31,000	-
2	28,000	30,000	28,000	-
3	31,000	32,000	31,000	-
4	31,000	32,000	31,000	-
5	31,000	32,000	31,000	-
6	28,000	30,000	28,000	-
7	28,000	30,000	28,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타경22278

## 나. 토지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통영시)	면적 (㎡)	단가 (원/㎡)	토지가액	비고
1	명정동 153	1,474	31,000	45,694,000	-
2	명정동 154	30	28,000	840,000	-
3	명정동 155	274	31,000	8,494,000	-
4	명정동 159	1,478	31,000	45,818,000	-
5	명정동 160	2,588	31,000	80,228,000	-
6	명정동 163	112	28,000	3,136,000	-
7	명정동 169	96	28,000	2,688,000	-
합계				186,898,000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 평가전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지	186,898,000
합 계	186,898,000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3	전	보전녹지지역	1,474	1,474	31,000	45,694,000	
2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4	전	보전녹지지역	30	30	28,000	840,000	
3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5	전	보전녹지지역	274	274	31,000	8,494,000	
4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9	전	보전녹지지역	1,478	1,478	31,000	45,818,000	
5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60	전	보전녹지지역	2,588	2,588	31,000	80,228,000	
6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63	전	보전녹지지역	112	112	28,000	3,136,000	
7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69	전	보전녹지지역	96	96	28,000	2,688,000	
<b>합 계</b>								<b>₩186,898,000.-</b>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소재 ‘총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7)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7) :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3)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5)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일련번호 7)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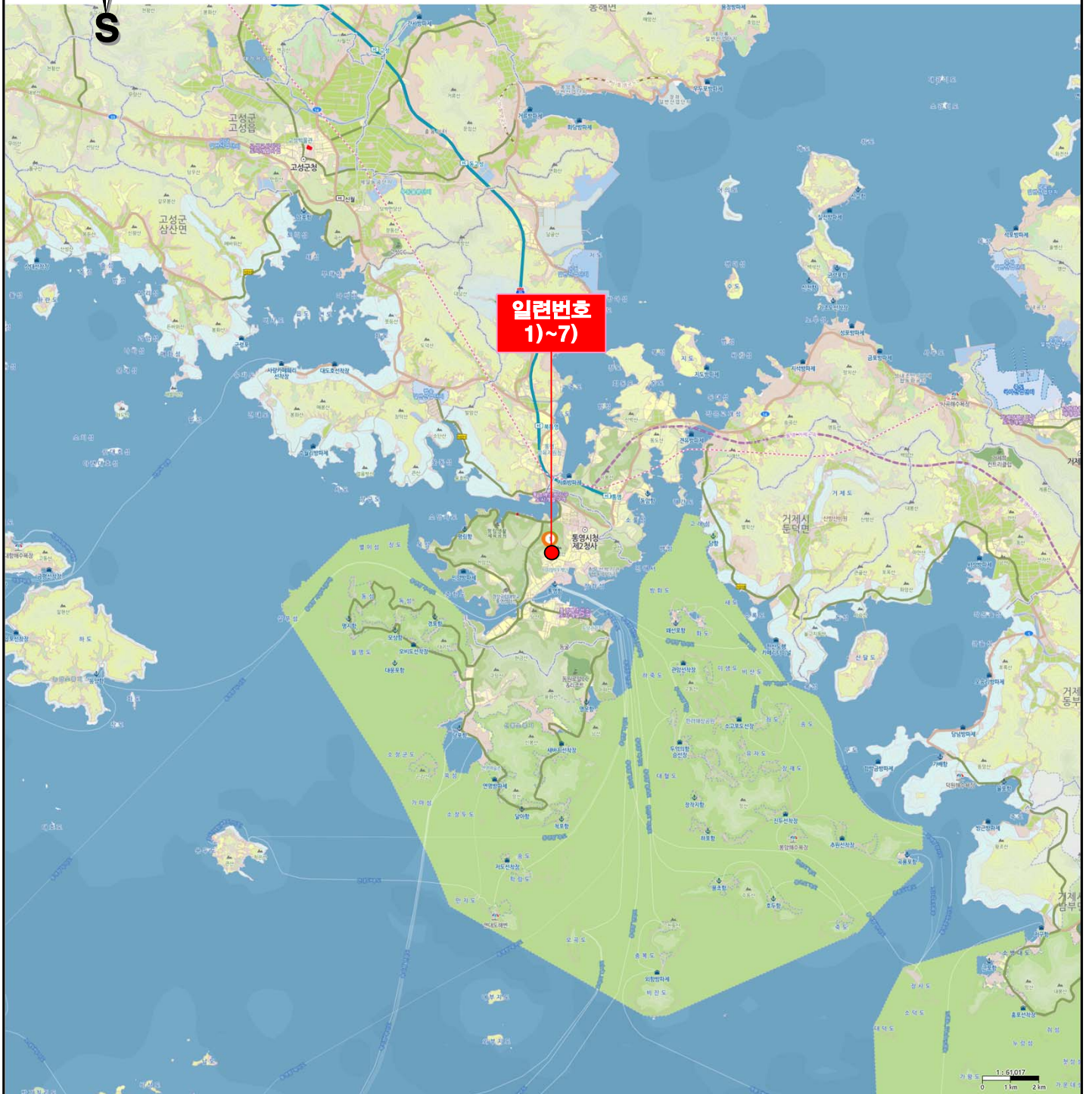
#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3 외

입력번호  
1)~7)



#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153 외

표준지 A  
(2024.01.01)  
@4,870원/m<sup>2</sup>

일련번호  
2)

일련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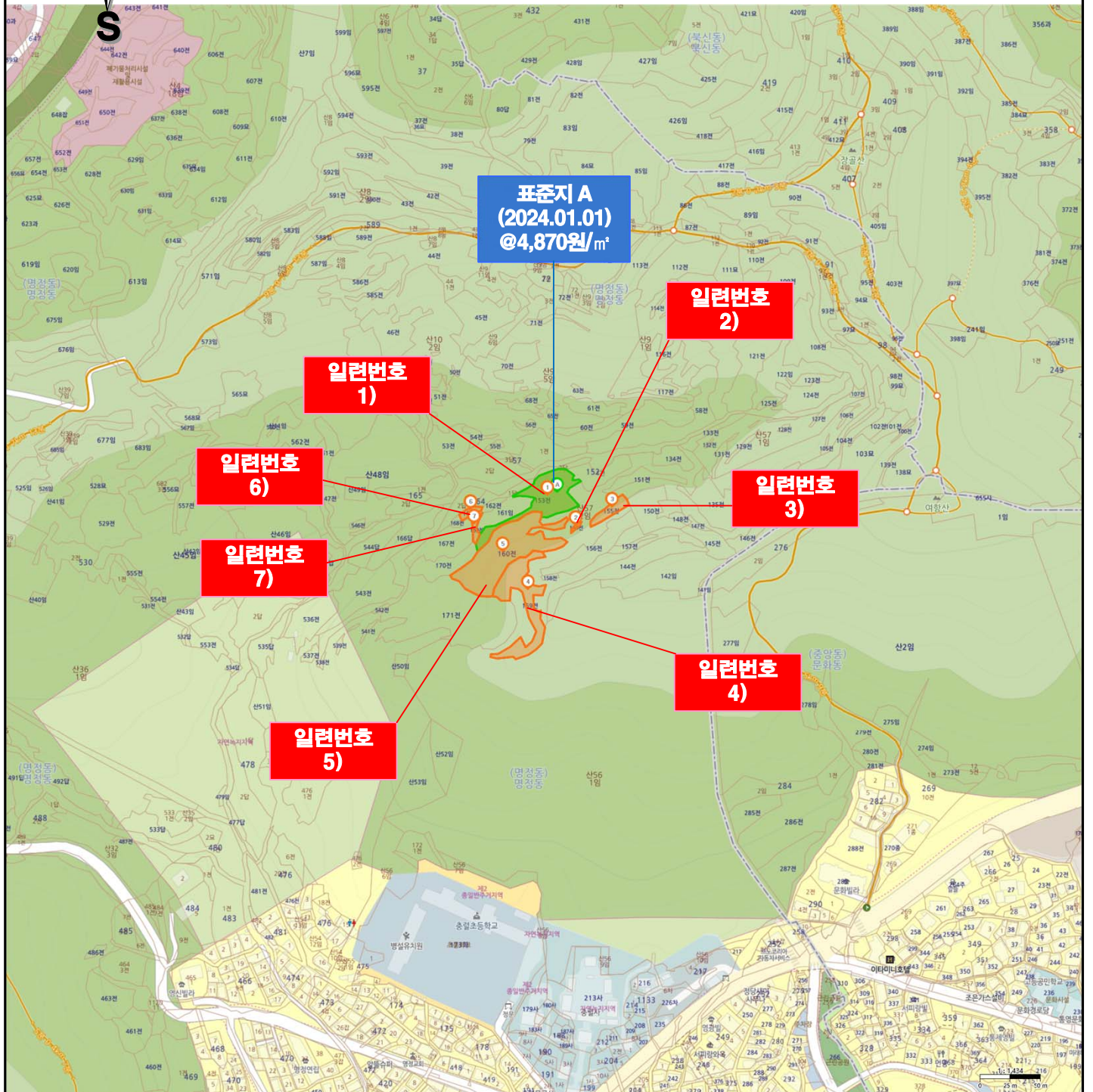
일련번호  
6)

일련번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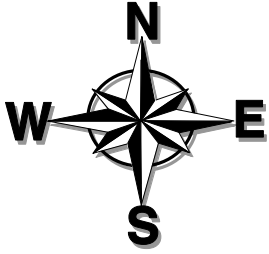
일련번호  
7)

일련번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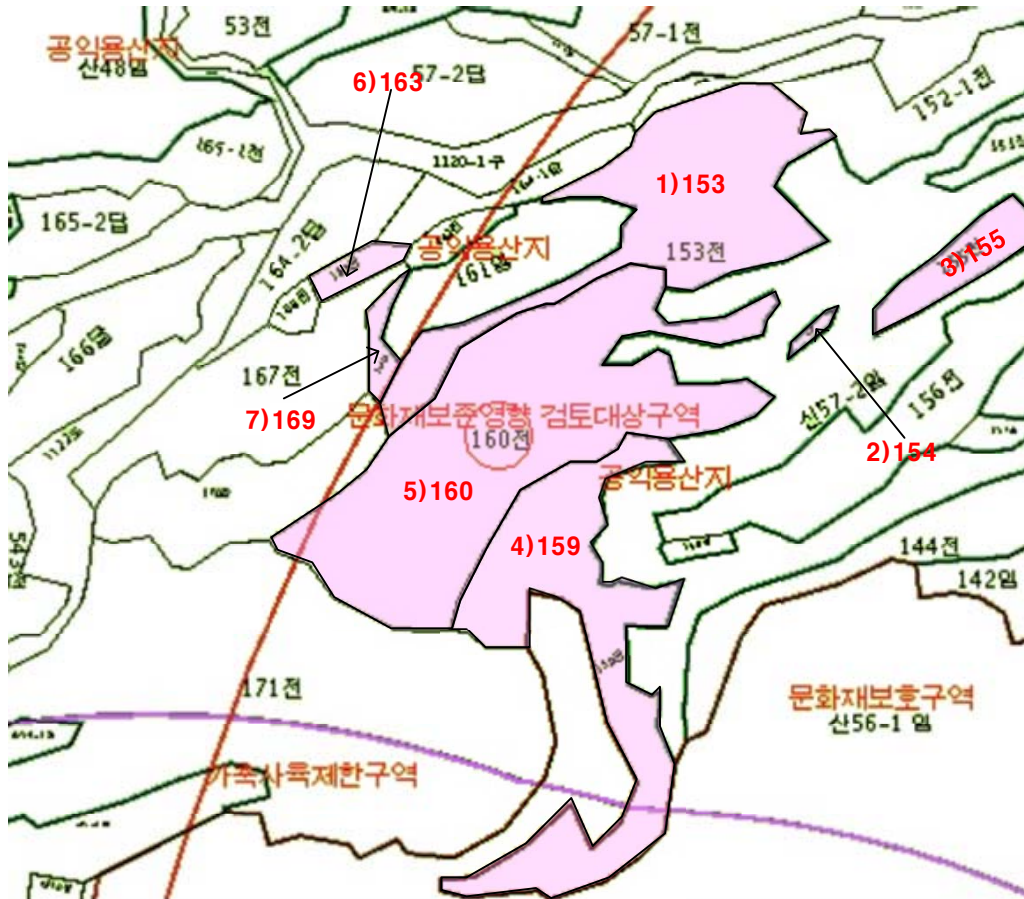
일련번호  
5)



#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지적 개황도 S: 1/1,600



범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지하층	 평가건물 3층이상
	 현황도로	 평가건물 1층	 제시외 평가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



1)



2), 3)



4), 5)



6), 7)

